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9년 6월 5일

나. 발 의 자 :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 2019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19. 6. 19.) 상정 “보류” 의결

마. 재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9. 9.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념사업 등의 경비의 보조(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정옥)

- 본 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
----------	-----

발의년월일 : 2019년 6월 5일

발의자 : 유승용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나.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기념사업 등의 경비의 보조(안 제5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2019. 6. 7. ~ 6.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 ①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